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06. 8. 31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가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(2006.3.24)과 관련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「긴급지원심의위원회」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
- 나.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준칙 변경 사항 중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규정 마련

2. 주요골자

- 가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(안 제2조)
- 나. 협의체위원 명단공개 :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임명 시 위원명단 공개 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6. 8. 8 ~ 8. 28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없음
- 마. 기타 : 조례표준안 시달(시 사회복지과-9686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건의”를 “건의·의결”로 하고,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의결은 제4호에 한한다.

4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
제3조제1항중 “20인 이내”를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로 하고, 동조제2항 중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 하며,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

제4조제2항중 “20인 이내”를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로 하고, 동조제3항 중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 “위촉”을 “임명 또는 위촉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위원명단 공개)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중 “각 협의체”를 “협의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각 협의체”를 “협의체”로 하고, 동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심의”를 각각 “심의·건의·자문·결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기능) 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<u>건의</u>하거나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단서신설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4.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3조 (구성)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부구청장·주민생활지원국장,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<후단신설>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 (기능) ①----- ----- <u>건의·의결</u> ----- ----- <u>다만, 의결은</u> <u>제4호에 한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</p> <p>5. ----- -----</p> <p>6.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 (구성) ①----- ----- <u>10인 이상 20인 이하</u> ----- ----- ②----- <u>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<u>이 경우 제1호 내지</u> <u>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</u> <u>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실무협의체) ①(생 략)	제4조 (실무협의체) ①(현행과 같음)
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_____ ----- 10인 이상 20인 이하 ----- _____
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주민생활지원과장, 보건 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	③_____ ----- 어느 하나 ----- _____
1. ~ 5. (생 략)	1. ~ 5. (생 략)
④~⑤(생 략)	④~⑤(생 략)
<신 설>	
	제4조의2 (위원회명단 공개)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제7조 (위원회의 해촉) 구청장 또는 간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7조 (위원회의 해촉) ----- 협의체 -----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회의록)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 3. 심의사항 4. 심의결과 5. (생략) ②(생략)</p>	<p>제9조 (회의록) ① 협의체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심의·건의·자문·결정 사항 4. 심의·건의·자문·결정 결과 5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